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1
----------	------

발의연월일 : 2025. 8.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달호 의원

1. 개정이유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사용허가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안전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설 이용편의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25조)

나. 운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규정 신설(안 제26조)

다.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화원게이트볼장 삭제(별표1)

라. 군민체육관 회원권 월회원 기준을 ‘주 6회’로 변경(별표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안전사고 예방) 운영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민체육관 월회원권 개정규정 적용례) 별표 2 중 군민체육관
월회원권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른 군민체육관 월회원권자에게
도 적용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 성 테 크 노 스포 츠 센 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달 성 테 크 노 폴 리 스 생 활 체 육 광 장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생활체육광장, 통합놀이터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삭제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 츠 파 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화 원 진 천 천 파 크 골 프 장	화원읍 구라리 1400	-파크골프장
논 공 위 천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위천리 648	-파크골프장
논 공 달 성 보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 창 파 크 골 프 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 가 한 정 파 크 골 프 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 지 평 촌 파 크 골 프 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옥포파크골프장			옥포읍 간경리 966-1	-파크골프장
현풍원오파크골프장			현풍읍 원교리 908-1	-파크골프장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성강변야구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회원권		1일 회원 (2시간)	5,000				
		월회원 (주6회, 1개월, 1일 2시간)	40,000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가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다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딩크 드림필드풋살 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90,000	12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야간	-	-	-	-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야간	-	-	-	-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논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 간 (1시간)	40,000	50,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50,000	60,000	135,000	165,000		
구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 변 야 구 장	마 사 토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인 조 잔 디		65,000	90,000	150,000	200,000		
달 성 스 포 츠 파 크	주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 조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목 적 체 육 관	전 용 사 용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 체 강 습 (1회 1시간)	월 100,000 (주 3회)			-	
				월 80,000 (주 2회)				
			개 인 강 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개 인 사 용	1 일 회 원 (2시간)	5,000			-		
			50,000 (주5회)					
			40,000 (주3회)			-		
		월 회 원 (1개월, 1일 2시간)	30,000 (주2회)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 구 장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 구 장	주 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 구 장	주·야간	-	-	-	-
	족 구 장	주·야간	-	-	-	-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4,000	면당 18,000	면당 28,000	면당 37,000
		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2,000	면당 55,000	면당 65,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20,000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35,000	면당 40,000	-	-
		야 간 (2시간)	면당 40,000	면당 50,000	-	-
	단체	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200,000	-	-
		주 2회		15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50,000	-	-
		주 2회		100,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헤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회원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1일 회원 (2시간)				
	회원권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40,000	-			
(참 략)							

-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기업단체에 대하여는 주간 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 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허딧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활회원의 경우 줄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헤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발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회원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1일 회원 (2시간)				
	회원권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40,000	-			
(현행과 같음)							

-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기업단체에 대하여는 주간 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 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허딧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활회원은 주6(월~토) 사용 가능함. 알성스포츠타크의 다목적체육관 활회원은 줄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헤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발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2024.10.22. 일부개정, 2025.4.23. 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8.28. 일부 개정, 2026.1.1. 시행)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